

청주지방법원 2024. 11. 28 선고 2023나50305 판결 [사해행위취소]

재판경과

청주지방법원 2024. 11. 28 선고 2023나50305 판결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22. 12. 22 선고 2021가단20098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메리트

담당변호사 조한주

피고, 피항소인 1. 주식회사 B

2. 주식회사 C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발

담당변호사 김동환

변론종결 2024. 10. 24.

판결선고 2024. 11. 28.

제1심판결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22. 12. 22. 선고 2021가단20098 판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별지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원고가 당심에서 제출한 갑 제38 내지 44호증의 각 기재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제2면 제15행부터 같은 면 제16행까지의 “2019. 11. 4.까지 공사를 진행하였는데, 그 당시 원고가 수행한 공사의 기성고율은 82.61%이고,”를 “2019. 8.말경까지 공사를 진행하였고, 2019. 11. 4.을 기준으로 원고가 수행한 공사의 기성고율은 82.61%이며,”로, 제4면 제2행의 “감정인 P”를 “제1심 감정인 P”로 각 고치고, 원고와 피고가 이 법원에서 특히 강조하고 있는 주장에 대해서 아래 ‘2. 추가 판단’을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사해행위취소청구의 피보전채권 소멸시효 완성 여부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피고들은, 원고가 2019. 8.경까지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전기공사를 마쳤고, 2019. 9. 1.경 공사대금채권을 행사할 수 있었으므로, 원고의 D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은 위 2019. 9. 1.로부터 민법

제163조 제3호에서 정한 도급받은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3년이 경과한 2022. 9. 1.이 도과함으로써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20. 12. 14. D로부터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채권의 변제를 위하여 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함으로써 위 공사대금채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되었다고 재항변한다.

피고들은, 원고가 2020. 12. 14. D와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공정증서상 채무변제기로 지정된 2020. 12. 17.로부터 3년이 지난 2023. 12. 17.이 도과함으로써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D이 2024. 9.경 원고에게 채무승인 및 변제확약서를 작성해 줌으로써 시효이익을 포기하였으므로 원고는 여전히 D에 대하여 공사대금채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재항변한다.

나. 판단

원고가 2019. 8.말경까지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전기공사는 진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원고는 이 사건 소장에서 위와 같이 주장하였고, 피고들 역시 위 주장을 전제로 소멸시효의 기산일을 주장하고 있으며, 이에 대하여 원고가 다투지 않고 있다). 따라서 원고의 D에 대한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채권은 2019. 9. 1.경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할 것인데, 그로부터 민법 제163조 제3호에서 정한 도급받은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3년이 경과한 2022. 9. 1.이 도과함으로써 위 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다.

한편 갑 제3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D이 2020. 12. 14. 원고에게 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해 준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시효중단사유인 채무승인에 해당하는 바, 이로써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러나 위와 같이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된 2020. 12. 14.로부터 새롭게 3년이 경과한 2023. 12. 17.이 도과함으로써 위 공사대금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다. 이를 지적하는 피고들의 항변은 이유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D이 2024. 9.경 원고에게 채무승인 및 변제확약서를 작성해 줌으로써 시효이익을 포기하였다고 재항변한다. 그러나 소멸시효를 원용할 수 있는 사람은 권리의 소멸에

의하여 직접 이익을 받는 자에 한정되는바,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상대방이 된 사해행위의 수익자는 사해행위가 취소되면 사해행위에 의하여 얻은 이익을 상실하고 사해행위취소권을 행사하는 채권자의 채권이 소멸하면 그와 같은 이익의 상실을 면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그 채권의 소멸에 의하여 직접 이익을 받는 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다54849 판결 참조),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 후 채무를 승인하였다면 시효완성의 사실을 알고 그 이익을 포기한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을 것이나, 그 시효이익의 포기는 상대적 효과가 있음에 지나지 아니하므로(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다100098 판결 참조), D이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채권의 시효이익을 포기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상대방으로서 독자적으로 소멸시효를 원용할 수 있는 피고들에게 D의 시효이익 포기의 효력이 미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재항변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소결론

원고가 주장하는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인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으므로, 원고의 예비적 청구는 이러한 면에서도 이유 없다.

3. 결론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예비적 청구와 선택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도형석, 판사 이종인, 판사 전보람

별지